

부록

[부록 표 1]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

법률	주요사항	내용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
제6조 제1항	기록보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 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
제7조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 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결제업자 등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 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 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배송업자, 호스팅서비스 등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송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 -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의 해결 협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수사기관

법률	주요사항	내용
제9조의2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할 것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자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률	주요사항	내용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하여야 한다. -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의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6.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p>③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p>

법률	주요사항	내용
제14조	청약확인 과 계약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신용카드나 그 밖에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한다. -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주요사항	내용
제19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한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販賣價額)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2. 공급한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20조	통신판매증개자의 의무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증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증개업자는 통신판매증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통신판매증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감사가 필요)
제20조의2	통신판매증개자 및 통신판매증개 의뢰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증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증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증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통신판매증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증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증개자는 제12조(신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 제14조(청약확인), 제15조(재화 공급), 제17조(청약철회), 제18조(청약철회 효과, 환불)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증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증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증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통신판매증개의뢰자는 통신판매증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증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주요사항	내용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제1항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제23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법률	주요사항	내용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 (계속)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계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p>-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제27조 제2항	공개정보 검색 등	<p>-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p> <p>-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부록 표 2] 한국과 일본의 통신판매 관련 규정 조건표

항목	한국	일본
통신판매협회	-	<p>(제30조) 통신판매협회 - 통신판매협회는 일반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인</p> <p>(제30조의 2) 협화설립의 신고 - 설립일부터 2주 이내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해야 함(등기 및 정관사본 첨부)</p> <p>(제31조) 명칭사용 제한 - 통신판매협회의 명칭 또는 상호로 오인될 문자를 사용할 수 없음 ▶ 위반 시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제76조)</p> <p>- 통신판매협회 미가입자는 명칭 또는 상호 중에 통신판매협회회원으로 오인될 문자를 사용할 수 없음 ▶ 위반 시 30만 엔 이하의 벌금(제73조)</p>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p>(제13조) -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p> <p>-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p> <p>-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p> <p>-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p> <p>-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력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 포함)</p> <p>- 재화 등의 교환·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p> <p>-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p> <p>-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p> <p>- 거래에 관한 약관</p> <p>-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p>	<p>(제11조) - 상품 또는 권리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판매가격에 배송료가 미포함된 경우 판매가격 및 상품의 배송료)</p> <p>- 상품 또는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불시기 및 방법</p> <p>-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권리의 이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p> <p>- 청약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p> <p>-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p> <p>(제12조) 과대광고의 금지 -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상품의 성능 또는 권리 또는 용역의 내용, 청약철회,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대광고하여 오인하게 해서는 안됨 ▶ 위반 시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제72조)</p>

항목	한국	일본
<p>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p>▶ 사업자 정보 또는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정보 제공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3조)</p>	
<p>청약철회</p>	<p>(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재화공급이 서면통지보다 늦게 이뤄진 경우 재화공급을 받거나 재화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미기재된 서면을 받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 정보변경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u>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u> - 청약철회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③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u>30일</u>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p>(제15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품구입자 또는 매매계약 청약자는 <u>상품의 인도 또는 지정권리를 이전 받은 날부터 8일</u>이 경과할 때까지는 매매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 가능 ② 청약철회 시 상품의 인도 또는 지정권리 이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면, <u>인수 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입자가 부담</u>
<p>청약철회의 제한</p>	<p>(제17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물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 가능)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단, 가분적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가능)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15조의2 제1항 단서)</p> <p>판매업자가 광고에 청약철회 등에 대한 특약을 표시했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특약을 표시한 경우 철회불가</p>

항목	한국	일본
금지행위	<p>(제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 또는 재화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p>▶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45조)</p>	<p>(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에 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시키고자 하는 행위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 -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 <p>▶ 위반 시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제72조)</p> <p>(제12조의3) 전자메일광고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승낙을 받지 않거나 광고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전자메일광고를 송신해서는 안됨 <p>▶ 위반 시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제72조)</p>
시정조치와 영업정지	<p>(제32조) 시정조치</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p> <p><조치의 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시정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제4조) 지시</p> <p>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p> <p>▶ 위반 시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제72조)</p> <p>(제15조)</p> <p>①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p>▶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엔 이하의 벌금(제70조의2)</p>

항목	한국	일본
시정조치와 영업정지 (계속)	<p>▶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천만 원 이내)</p>	<p>③ 주무대신은 업무의 정지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함</p>
임시중지 명령	<p>(제32조의2) 임시중지 명령</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금지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및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한 손해 확산 우려가 있어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시중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계산서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을 요청가능 ⇒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함</p> <p>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제기 가능</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제기 후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p>	
금지청구권	<p>(제32조의2 제3항)</p> <p>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나 기관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p>	<p>(제58조의5)</p> <p>적격소비자단체(「소비자계약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단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의 성능 혹은 권리, 용역의 내용, 청약철회 혹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정지, 예방, 물건의 폐기 또는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p>
위반행위의 조사	<p>(제26조)</p> <p>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제66조)</p> <p>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자,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보고 또는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직원에게 판매업자 등의 점포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항목	한국	일본
위반행위의 조사 (계속)	② 시·도지사가 조사를 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권한위임		제14조(지사), 제15조(영업정지)에서 규정하는 주무대신의 권한, 제12조, 제66조(현장검사, 자료제출명령)를 도도부현 지사가 할 수 있다.

출처 : 국내 전자상거래법, 일본 특정상거래법

